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2055호
2025년 3월 13일
목요일

훈 령

○ 훈 령 제 4 2 9 호 남동구립도서관 직원 근무 규정

평 생 교 육 과 2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훈 령

남동구립도서관 직원 근무 규정을 다음과 같이
발령한다.

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

2025년 3월 13일

남동구 훈령 제429호

남동구립도서관 직원 근무 규정

제1조(목적) 남동구립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「지방공무원
복무규정」과 「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·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
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남동구립도서관 직원들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
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무일 조정) ① 남동구립도서관(이하“도서관”이라 한다) 직원
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2교대로 근무한다. 단, 서창어울마당작은도서
관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2교대로 근무한다.

② 도서관 직원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 중 도서관 휴관일에 휴무한다. 다만 도서관의 휴관일이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과 겹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.

제3조(근무조 편성 및 근무명령) ① 제2조에 의한 토요일 또는 일요일(서창어울마당작은도서관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) 근무조는 도서관 근무 순서에 따라 월별로 편성하고, 전임 직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근무일을 적용한다.

② 도서관장은 근무시작일 전까지 근무자에게 근무조 편성에 따른 근무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업무협의를)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직원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(개)정 이유 및 주요내용

☐ 제안이유

- 남동구립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도서관의 휴관일을 평일로 지정함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일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- 근무일 조정에 관한 사항 : (안 제2조)
- 근무조 편성 및 근무명령에 관한 사항 : (안 제3조)
-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: (안 제4조)